

이주노조 지도부인 강제출국 관련 법무부의 초법적 행위에 대한 법무장관 고발 기자회견

"법무부의 치졸한 작태를 고발한다"

▶ 일시 : 2008년 6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층 기자회견장

▶ 주최 : 이주노조 탄압 저지 기독교 대책위원회, 참여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장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민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진행 내용

- 사회: 민주노총 석권호 비정규국장
- 참가단체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여는 발언 : 이정희 국회의원/민주노동당
- 법무부의 이주노조 파괴를 위한 표적 탄압의 실태
-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퇴거 과정에 대한 법무장관 고발 및 위법 사항 설명[도표 참조]
-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 모임 대표
- 질의응답

자료 내용

1. 사건의 경과(pp.3-7)
 2. 적법절차를 무시한 법무부의 이주노조 제3대 지도부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표1](p.8)
 3. 법무부의 이주노조 탄압-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 침해 /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경과[표2](p.9)
- <첨부 자료>
1. 법무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별지 첨부]
 2.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별지첨부]
 3.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 결정문(pp.10~12)
 4. 강제퇴거 과정에 대한 소부르 부위원장의 편지(pp.13~14)

1. 사건의 경과

1-1. 이주노조 지도부 2인 표적단속 및 강제추방의 경과

5월 2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과 압두스 소부르 부위원장 등이 각각 사무실 앞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던 서울출입국 단속반원에 의해 표적단속 되어 강제연행 되었으며, 곧바로 청주보호소로 이송됨.

이는 지난 해 11월 27일에 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동시에 표적단속 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임. 2005년에 이주노조 건설 당시 초대 위원장이었던 아느와르 위원장도 노조결성 한 달 만에 표적단속 되었고, 이주노조의 전신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샤말 지부장도 표적단속 된 바 있음.

결국 정부는 이주노조가 지도부를 구성할 때마다 표적단속 하여 왔으며, 이는 이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과 단결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을 침해하는 행위임.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에 대한 항의가 있자, 법무부는 “정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적발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그러나, 십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이 사무실 앞과 집 앞에서 오랜 시간 잠복하고 있다가 신분을 확인하였으므로 우연한 적발일 수 없고,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잡아들이는 방식은 법무부의 전형적인 수법임. 법무부는 표적단속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였음.

또한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공장소에서 정부의 불법체류 정책반대 시위를 주도해 왔다”고 하면서 표적단속의 정당성을 강변하였음.

그러나 아무리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음. 더욱이 지난 1월 중국 동포 여성노동자가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가다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지난 4월에 마석에서 역시 단속 중에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추락하여 크게 다치는 사례처럼, 단속 때문에 죽고 다치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를 통하여 발언하는 것을 억압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조차 방기한 것이며, 이주노동자를 인간으로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임.

5월 15일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청주보호소에 강제구금되어 있던 이주노조 지도부 2인에 대한 추방을 자행하였음. 이들을 표적단속한 지 13일만임.

강제추방이 이루어지기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도부 2인에 대한 표적단속 과정과 강제구금이 반인권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강제추방을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법무부에 발하였으나 법무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음. 이는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권력의 자기성찰적 노력조차 공권력 스스로 무시한 것으로 법무부가 얼마나 오만불손한 기관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또한,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의 표적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들을 공항으로 이송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이들의 대리인에게 조차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법무부 스스로 정한 절차조차 엄수하지 않았음.

그리고,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의 표적단속과 강제구금, 강제추방 조치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강제추방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면서 '행정집행 부정지 원칙' 운운하며 강제추방 조치를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재판받을 권리 조차 부정하였음.

뿐만 아니라, 강제추방 당시,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은 표적단속과 강제구금의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병든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외부진료를 요구하면서 처절히 단식하고 있는 중에 야반도주처럼 이들을 강제출국시켰음.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구금환경으로 인하여 당뇨병을 얻게된 수바수씨를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강제추방함으로써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병증을 호소하는 단속이주노동자, 심지어 만삭의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조차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단속된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상습적으로 지속해 옴.

1-2. 이주노조 지도부 2인 표적단속 및 강제추방 관련 대응 경과

5월 2일 (금)

- 7:30,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개최. 이 자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논의
- 토르너 위원장 체포 위해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서 5월 2일 새벽부터 출입국 단속반 잠복 대기한 것으로 확인됨.
- 20:20분 경, 이주노조 사무실을 나서던 이주노조 위원장 사무실 바로 옆 중구청 네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잠복 중이던 10여 명 이상의 서울출입국 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강제 연행.
- 21:00 경, 소부르 부위원장 자택 주변에 잠복해 있던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강제 연행.
- 24:30분 경,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도착.

5월 3일 (토)

- 11:0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 항의 긴급 기자회견 진행
- 11:00, 변호인과 이주노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접견 및 변호인 선임,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접수
- 15:00,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 대응 위해 긴급 대책 회의,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재가동하고 확대 결정, 상황실 구성

5월 4일 (일)

- 14:00,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 회의

5월 5일 (월)

- 22:3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 이주노조 2인 지도부 석방 촉구 청주외국인보호소 앞 노숙 농성
- UN Special Representative on Human Rights Defenders(인권 보호자에 대한 특별 보고관)에게 긴급구제신청 제출.

5월 6일 (화)

- 09:30, 이주탄압분쇄비대위 회원 20여 명, 청주의국인보호소 집단 면회 및 석방 촉구 집회
-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에 긴급구제신청 제출

5월 7일 (수)

- 11:00,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조지도부 2인 석방! 이주노동자 탄압중단 촉구!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
- 15:00 이주노조 표적단속 출입국관리소 규탄, 지도부 즉각 석방 촉구 및 릴레이 단식농성 결의대회 및 촛불 집회
- 16:30 서울출입국관리소 소장 면담 요구했으나 불응.
- 22:00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철야 농성

5월 8일 (목)

- 10:00 국가인권위 김칠준 사무총장 면담(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 진정 사건 조속 처리 촉구를 위한 면담)
- 11:00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위원장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및 강제퇴거 집행 중지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
- 11:00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릴레이 단식 농성 1일차 진행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이주노조 2인 지도부 표적 단속 내용을 이주노조 사안에 제소의 추가 자료로 제출.

5월 9일 (금)

- 11:00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릴레이 단식 농성 2일차 진행
- 11:00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석방 촉구 각계 인사 선언(프레스 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1526명 서명
- 보호 명령, 강제퇴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제출.
-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지지와 연대를!' 시민서명운동 시작

5월 10일 (토)

-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릴레이 단식 농성 3일차 진행
- 소부르 부위원장, 외부진료 받음(폐, 가슴, 신장 X-RAY, 소변검사 등, 한국병원-2차 진료기관, 종합병원), 결과는 별 문제 없다는 진단, 이틀 간 먹는 약 처방 받고 돌아옴.
; 새벽 내내 진통이 심했고, 오전에 보호소 의무과장이 나옴, 소부르 부위원장의 외부진료 요구에 수갑차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거부함. 오후 경 이주노조측에서 소부르 부위원장 통증이 심해보여 일단 상태 확인위해 외부진료 받을 것을 권유함. 그리고 그 동안 보호소에서 받은 진료 기록 변호사 통해 달라고 요구함.

5월 11일 (일)

- Migrants' 아리랑 축제에 참가해 리플릿 배포하고 서명 운동 진행.

5월 12일 (월)

- 소부르 부위원장 의무과장 만나 2차 외부진료와 대학병원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함.
; 의무과장은 추가 외부진료는 필요없다는 입장,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의무과장이 욕을 했다고 함.
- 아침 소부르 부위원장 연락 받고 의무과장과 통화 시도했으나 거부하고 변호사와만 얘기하겠다고 함.
; 변호사 통해 외부진료와 의무 기록 다시 요구했고, 의무과장은 공식 공문으로 접수하면 보호소장의 결제

받아 진행하겠다는 답변, 그래서 내일 오전 정식 공문 작성해 제출하기로 함, 외부진료는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모두 신청하기로 했고, 정신과 진료도 함께 요청하기로 함.

5월 13일 (화)

-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릴레이 단식 농성 4일차 진행
-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외부진료 요청 공문 발송
- 청주외국인보호소 2인 면담 : 소부르 부위원장 건강 상태 확인, 약물 처방에도 몸 상태 전혀 개선되지 않고 몸 상태 계속 악화되는 상태 확인
- 소부르 부위원장 외부 진료 요구하며 저녁부터 단식 시작.

5월 14일 (수)

-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릴레이 단식 농성 5일차 진행
- 소부르 부위원장 단식 2일 째
- 청주외국인보호소측은 외부 진료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밝혀옴.
- 19:00 광화문 교보 문고 앞 이주노조 2인 지도부 석방 촉구 촛불 문화제
- 20:00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 참가해 선전전 및 서명운동

5월 15일 (목)

-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릴레이 단식 농성 5일차 진행
- 소부르 부위원장 단식 3일 째, 토르너 위원장 단식 1일째 진행
- 서울/대구 출입국관리소 앞 규탄 집회, 청주외국인보호소 앞 기자회견, 부산 지역 대시민 선전전 진행.
- 이주노조 2인 지도부 강제추방 집행.
- 이주노조 표적단속 출입국관리소 규탄, 지도부 석방촉구 결의대회 2차 및 강제추방 규탄 긴급 항의행동 진행

5월 16일 (금)

- 11:00 이주노조 지도부 졸속적·반인권적 강제추방 규탄 긴급기자회견
- 13:00 인권위 항의면담
- 강제추방 규탄, 합동단속추방 중단 릴레이 단식농성 1일차

5월 23일 (금)

- 강제추방 규탄, 합동단속추방 중단 릴레이 단식농성 7일차
- 19:00 광화문 교보 문고 앞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 규탄, 합동단속 중단 촉구 촛불 문화제

5월 25일 (일)

- 14:00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결의대회

5월 29일

- 11:00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강제추방 규탄, 반인권적 합동 단속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1-3. 국제 사회의 이주노조 지도부 2인 표적단속 및 강제추방 항의대응

- 5월 4일, Indonesian Migrant Workers Union (IMWU), [홍콩노총 산하 조직]의 항의 편지 한국 정부에 발송
- 5월 6일 WOREC-Women's Health [네팔]의 항의 편지 한국 정부에 발송
- KASAMMAKO], Asian Pacific Mission for Migrants(APMM), Migrant Forum Asia (MFA)에서 연대 성명서 발표
- 일본 지바현 동력차노조에서 연대성명서 발송
- 홍콩의 Asian Pacific Mission for Migrants (APMM), Asian Migrants' Coordinating Body (AMCB)가 5월 7일 오전 11시 한국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
- 5월 8일, 방글라데시 시민 단체(Warbe, BMWA, IMF-Bd, Ramrro 등)들이 모여 한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
- 국제서명운동 진행: <http://www.ipetitions.com/petition/StopMigrantRepression/signatures.html>
- Amnesty International은 한국의 이주 정책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제기하기 위해 5월 6일-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UPR에 참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게 한국 이주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제네바 대표부, 대표단 면담을 요청해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 문제를 제기. 5월 9일 이 사안에 대한 성명 발표.
-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아시아인권위원회)는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발송.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관계자를 통해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 '인권 보호자에 대한 특별 보고관', '자의적 구금 위원회'가 5월 16일 한국 정부에게 공동 "inquiry" (이주노조 2인 지도부 표적 단속 사건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
- Amnesty International은 이주노조 2인 지도부 추방이 종료되기 전에, 추방 중지 요구서를 법무부와 출입국에게 팩스로 보냈고, 한국 지부에게 연락해 항의 팩스와 법무부 면담을 요청했음. 또 Amnesty International은 이 사안에 대해 언론 보도 자료를 발표.
- 5월 20일, 독일 교회선교연합(Association of Churches and Mission in Southwest Germany)이 한국법무부장관에 항의서한 발송.
- 5월 28일, FORUM-ASIA(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법무장관에게 항의 편지 발송.
- 5월 27일, Indonesian Migrant Workers Union (IMWU) 법무장관과 노동부 장관에게 항의 편지 발송.
-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법무장관에게 항의 편지 발송.

[표1]적법절차를 무시한 법무부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제3대 지도부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

<p>2008. 5. 2. 서울출입국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이주노동자 위원장 부위원장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표적단속</p>	<p>2008. 5. 9.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 접수</p>	<p>2008. 5. 15. 11:00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제퇴거 중단” 긴급구제 결정 13:00 법무부에 통보</p>	<p>2008. 5. 15.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행정소송 무시하고, 변호인에게 통지 없이, 이의신청기각결정 30분만인 13:30부터 이주노동자 지도부 강제퇴거 집행개시 21:30경 전원 강제출국 시킴</p>
<p>신체의 자유 침해 - “긴급보호” 남용</p>	<p>재판청구권 침해 - 행정소송 접수하자 6일 만에 강제출국</p>	<p>인권위 진정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형사 처벌 대상 (제48조2항)</p>	<p>변호인 조력권 침해 적법절차원리, 출입국관리법 위반</p>
<p>○출입국관리법은 예외적으로 긴급보호를 허용(51조3항)</p> <p>○긴급보호는 긴급체포와 같 이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p> <p>○“표적단속”에서도 긴급보호 제도 남용하고 있음</p>	<p>○변호인이 서울출입국, 인천 공항출입국, 법무부 외국인정 책본부에 행정소송 소장 사본 팩스 전송 강제퇴거 중단요구</p> <p>○행정법원에서 효력정지신청 을 심리할 물리적 시간도 주 지 않고 강제출국시킴</p>	<p>○인권위는 법무부, 서울출입 국에 “진정사건의 조사가 완 료될 때까지 강제퇴거 집행 유예하라”고 권고 통보</p> <p>○진정인들의 진술청취 원천 봉쇄 진정권 침해</p> <p>○법무부는 이주노동자 전임 지 도부에 대하여도 진정권 침해 하고 강제출국시킴바 있음</p>	<p>○변호인은 2008.5.5. 보호명 령,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함</p> <p>○법무부, 서울출입국은 이 의신청권자인 변호인 등에게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알리지 않은 채 강제퇴거 집행 개시 (법제55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위반함)</p>

[표2] 법무부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탄압 -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 침해

<p>2005. 5. 14. 이주노동자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에 대하여 폭력 행사하여 표적단속 -2007. 5. 11. 손해배상 승소, 자진출국</p>	<p>2007. 11. 27. 이주노동자의 3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표적단속 2007. 12. 13. 인권위 진정조사 완료 전 전원 강제출국 당함</p>	<p>2008. 5. 2. 이주노동자의 3대 (보궐)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p>	<p>2008. 5. 15. 법무부 인권위의 강제퇴거 유예 결정, 행정소송 중인 사실 무시하고, 이주노동자 3대 (보궐) 지도부 전원을 조기에 강제출국 시킴</p>
---	--	--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소송 경과

<p>2005. 5. 3. 이주노동자 설립신고서 제출 2005. 6. 3. 노동부 이주노동자 설립신고서 반려처분</p>	<p>2005. 6. 14. 이주노동자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함 2006. 2. 7.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패 판결 (2005구합18266)</p>	<p>2007.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주노동자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 (원고승) (2006누6774)</p>	<p>2008. 5.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임 (2007두4995)</p>
---	--	---	---

<첨부자료.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인1550 외국인 강제구금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 이정원

피해자 림부 토르너 (Limbu Torna Bahadur)

소부르 압두스 (Sabur MD Abdus)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번호 08진인1550호 진정사건의 조사가 완료 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8. 5. 2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림부 토르너'와 '소부르 압두스'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하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였으며 2008. 5. 4.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였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림부 토르너의 오른쪽 팔을 꺾고 무릎아래 부분을 발로 가격하는 등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야간에 10여 명의 직원들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소부르 압두스의 집에 침입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다. 또한 이주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간부들에 대한 표적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구제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시켜 주기 바란다.

2. 사건의 경과

가. 2008. 5.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피해자들을 긴급보호처분 하였으며 같은 달 4.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되었다.

나. 피해자들은 2008. 5. 5. 법무부장관에게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2008. 5. 6. 유엔 이주자인권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에게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2008. 5. 8. 진정인이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하였다.

3.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던 관련 진정사건

가. 05진인1466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건

- 1) 2005. 5.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주노조의 초대위원장이었던 아노아르(MD. ANWAR HOSSAIN)를 지하철역에서 연행하였으며 같은 달 16.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하였다.
- 2) 2005. 5. 17. 아노아르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위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고 법원에도 위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3) 2005. 11. 14. 우리 위원회는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4) 2007. 5. 11. 진정인이 제기한 위 손해배상소송은 대법원에서 진정인의 승소로 끝이 났고 진정인은 2007. 7. 26.에 출국하였다.

나. 07진인4691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건

- 1) 2007. 11. 27. 이주노조의 2대 위원장 까지만, 부위원장 라쥬, 사무국장 마숨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단속 및 강제퇴거 명령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우리위원회에 접수되었다.
- 2) 우리 위원회가 위 사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2007. 12. 1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 피해자들을 강제출국시켰다. 우리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해 1차 접견조사는 마친 상태였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출국시킨 이후인 2007. 12. 18.에서야 우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여부를 조사·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대조, 교차신문, 대질신문 등 기본적인 조사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에서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는 조사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위원회는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진정내용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조사를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볼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를 간과한 채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이 또한 하나의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위 관련 진정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 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그 사건의 진상과 경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들을 조기에 강제 출국시킨 바가 있고 이 때문에 실제로 우리 위원회는 사건 조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2항은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된 진정요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림부 토르너를 체포할 때에는 오른쪽 팔을 꺾고 무릎아래 부분을 발로 가격하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소부르 압두스를 체포할 때에는 10여 명의 직원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가택에 침입하였으며 표적단속을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충분한 진술과 피진정인 측과의 교차신문, 대질신문 등을 통한 증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번호 08진인1550호 진정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15.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강제퇴거 과정에 대한 소부르 부위원장의 편지

2008년 5월 15일 1시 30분 경, 청주보호소 직원 한명이 나를 밖으로 불러냈다. '왜 불렀냐고' 라고 물어보자, 출입국 직원은 '누군가를 만나야 하니 밖으로 나와달라'고 했다. 그들은 나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그 중의 한 사람이 '나는 지난 12월달에 마숨을 방글라데시까지 데리고 간 적이 있다. 내가 당신을 방글라데시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회복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방글라데시로 귀국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나를 강제출국 시키는 것은 국가위원회 규정위반이며, 현재 상태에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출입국사무소의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의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어쨌든 당신을 방글라데시로 돌려보낼 것이다. 모든 책임은 장관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는 나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

그 후 보호소 직원 두 명과 함께 물건을 챙기면서 방으로 돌려보냈다. 타월 하나, 러닝셔츠 두 개, 팬티 두 개를 챙기자, 보호소 직원은 나를 다시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 그때 나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조사실에 돌아와서 보니, 출입국에서는 토르너 위원장에게도 자기 짐을 챙겨서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자, 보호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인을 거부했다.

그 후 우리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길래,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의 변호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야하니 전화를 걸어달라'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2~13명가량 정도 되는 법무부와 보호소직원들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은 말할 수 없으니 비행기를 탄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차에 실어 청주보호소의 정문을 피해 작은 골목길을 통해 보호소 밖으로 나왔다. 그 후 차에서 내려 논밭을 가로질러 한참 걸어가자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둔 차가 있어 그 차로 갈아탔다. 비행기 시간이 많이 남았던지 그 근처를 뱅뱅 돌며 시간을 보낸 후 5시10분에서 30분 사이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해보니 이미 출입국직원과 법무부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안내를 따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들어가 출국수속을 마쳤다. 인천공항에는 추방을 기다리는 외국인의 대기실이 있었지만 우리는 따로 마련된 대기실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45개월 쯤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안고 있는 필리핀 사람이 있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전화통화를 요청했으나 묵살되었다. 그곳에서 저녁 8시 30분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법무부와 출입국직원들은 8시 30 이후 우리를 방에서 데리고 나와 출국심사대로 데리고 가 출국수속을 밟았다. 그때 나와 토르너 립부, 우리 두 사람은 약간의 한국 돈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환전을 요청했다. 토르너 립부 위원장은 대략 45만 원 정도가 있었고 나는 166,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에 있던 법무부 책임자는 한 직원에게 환전을 해오라고 했다. 그 환전 영수증에는 환전을 했던 직원의 이름, 은행명, 시간 등이 기록되어있다. 대략 9시 정도에 그 직원이 달려가 들어있는 국민은행 봉투, 환전영수증, 잔돈 등을 건네주었다.

몇 분 후에 나와 토르너 립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비행기에 타고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 승객들에게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한 한국여성이 핸드폰을 빌려줘서 이주노조 이정원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다. 이정원에게는 '우리는 지금 강제로 출국당하는 중이며 현재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때 우리가 탄 타이항공의 이륙시간이 지연되어 승객들이 승무원들에게 항의를 하자, 비행기에서는 '비행기 안에 두 명의 범 죄자가 탑승하고 있어서 이륙이 지연되고 있으니 잠시만 더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내 보냈다. 그때 타이항공 승무원이 나와 토르너 립부에게 '당신들이 비행기에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길래, '우리를 당장 이 비행기에서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그 승무원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 그 후 15분에서 20분 후, 법무부와 출입국 직원 4명이 우리 옆자리 앉았고 잠시 후 비행기가 이륙하였다. 우리는 다시 어떤 여성승객에게 핸드폰을 빌려서 비행기가 이륙하였다는 사실을 이주노조에 전달하였다. 그때 시간은 밤 9시 30분이었다.

비행기는 방콕에 대략 자정 즈음에 도착했고, 방콕 공항에는 이미 출입국(혹은 법무부)직원 한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네 명의 출입국 직원들과 타이항공 출입관련 직원이 우리를 타이공항의 보호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나는 16일 10시 40분에 출발하는 방글라데시 항공, 토르너 림부는 10시 30분 발 네팔항공을 타게 될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10시 10분에서 20분경에, 타이항공과 타이 출입국 직원들이 우리를 각각 비행기에 태웠다. 몇 분 후에 방콕 공항에서 만났던 한국 출입국 직원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여기 오기 일주일 전부터 방콕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들을 강제 출국시킬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와 있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사탕을 선물로 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와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서울출입국사무소 소장이 토르너 림부의 강제퇴거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했다.

그날 10시 30분, 타이 공항 출입국을 통과하여 방글라데시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타이 시간으로 10시 55분에 비행기가 이륙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시간으로 12시에 다카공항에 도착하였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방글라데시 출입국 직원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발급한 여행허가증을 나에게 주면서 입국수속을 받으라고 했다.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발급한 여행허가증의 내 인적사항은 틀린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그 여행허가증을 가지고 입국수속대에 가서 보여주었더니 그냥 통과시켜 주었다. 나는 나갈 때 여행허가증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것은 다시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는 그냥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그들은 어떠한 적법한 절차없이 나를 그냥 방글라데시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강제퇴거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출입국에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나를 강제출국 시킨 것이다. **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당한 조치를 무시한 법무부 장관과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의 처벌을 원하며, 또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한 바 이에 합당한 배상을 요구한다.**

내가 청주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청주보호소 의사와 청주보호소 소장은 내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 보호소에 있는 동안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수 차례 진료를 요청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법과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2008. 5. 25

방글라데시에서

MD ABDUS SUBUR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부위원장